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부조리 신고자(안 제3조)
- 다. 부조리 신고자의 성실 의무(안 제5조)
- 라. 부조리 신고자방법(안 제6조)
- 마.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안 제10조)
- 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14조)
- 사. 부조리 신고자 신분보호 등 위반시 벌칙(안 제17조)

4. 검토의견

이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 신고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에 대한 정의규정과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유선,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정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최고 2천만원이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보상금 환수절차와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방지 노력 책무를 이행하고 도민의 부패 척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조례 제정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있어 행정조직 내부의 감시기능의 강화와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